

교원윤리강령규정

개정 2019.04.17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에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강령은 본교의 모든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교원의 기본윤리)

- ① 교원은 혜전대학교인(이하 “본교인”이라 한다)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교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본교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 (사명완수)

교원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교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 ①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 2 (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교원은 모든 외부강의회의심사평가 등을 할 경우 월 4회

또는 월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무팀에 신고한 후 총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조항 신설 2016.12.08.><개정 2019.01.22., 개정 2019.04.17>

제8조 (공·사 구분)

- ①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교원은 본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본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원은 총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 (학생존중)

교원은 학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10조 (학생만족)

- ① 교원은 학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교원은 학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학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1조 (회계법규 준수)

교원은 회계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가 및 대학의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 (공정한 거래)

교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교원 존중)

본교는 교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교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한다.

제14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① 교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학경영을 통하여 건실한 대학으로 성장 발전시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교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본교는 교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

교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수의무와 책임)

교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7조 (포상 및 징계)

- ① 총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교원에 대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대학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4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일자에 “교원윤리강령내규 (2012.2.23. 제정)”는 폐지한다.

부 칙(2016.12.08.)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0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2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 부터 시행한다.